

수수료 부과에 관한 규정

제정 2019.01.01

제1조 (목적)

규정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, 법시행령, 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 및 회사의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운용보수(집합투자업자보수)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나. 판매보수(판매회사보수)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다. 신탁보수(신탁업자보수)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라. 일반사무관리보수(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)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마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(법 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의 요건을 충족하고,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
2. 수수료
 -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 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

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하며,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

제4조 (수수료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 (수수료 부과절차)

- ① 보수 및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, 포트폴리오의 규모,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별로 결정한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하고, 시중에 출시된 유사한 상품의 사례를 조사하여 최근의 현황을 반영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

제6조 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 (투자광고)

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 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및 정관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혹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제9조 (공시)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